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19. 1. 24.> <u>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(제19</u>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)

가점비율 분야	5퍼센트	3퍼센트	1퍼센트
자격증 (면허증)	자격 중 기술사·기 능장 2. 1급 ~ 4급 항해사	 5급 또는 6급 항해 사·기관사 응급구조사(1급), 간호사 	자격 중 산업기사· 기능사 2. 소형선박 조종사,
사무 관리		컴퓨터활용능력 1급	컴퓨터활용능력 2급

비고

- 1. "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"이란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·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.
 - 건축, 건설기계운전, 기계장비설비·설치, 철도, 조선, 항공, 자동차, 화공, 위험물, 전기, 전자, 정보기술, 방송·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비파괴검사, 에너지·기상
- 2. 자격증(면허증) 및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,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, 자격증(면허증)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